

환경·관·련·질·의·응·답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를 15년 장기 임대하여 아울렛으로 의류 유통 영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내에는 많은 의류업체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거 부담해야 한다면 입점해 있는 많은 업체들도 부담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사에 입점해 있는 업체들은 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분담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에 대하여 환경오염자가 부담하여 한다는 근거를 요청합니다.

Q1 : 환경개선부담금은 누구에게 부과 되며 누가 부담하여 하는가?

Q2 :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이 원용되는 법조문 부탁드립니다.

Q3 : 환경개선부담금이 입점해 있는 많은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근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고자 '93년부터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 일부를 부담토록하여 오염물질의 발생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써 시설물의 용도에 따라 부과 기간동안 사용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토대로 부과징수 됩니다.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개선부담금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 현재 당해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으며, 이는 임대차건물의 경우 실질적인 오염행위는 당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세입자)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이들 사용자에 대한 부과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보다 충실히

다고 볼 수 있으나,

- 건물임대차에 의한 사용자의 경우 대부분이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내부거래행위로 이루어져 실제 세입자 파악이 어렵고, 변동에 관한 사항이 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세입자별 용수 및 연료계측기 미부착 등 사유로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부득이하게 법률적인 납부의무자를 시설물 소유자로 규정하고 건물주에게 부과고지 하고 있는 설정임을 말씀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본 법령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부담금 납부의무자(임대인)가 사용자(임차인)에게 관리비 봇으로 구상토록 하는 것은 당사자간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며, 최종적으로 납부의무자가 계속하여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률에 의거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절차가 진행됨을 말씀드립니다.

유독물 관리자 겸임

유독물 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기나 수질 환경기술인을 겸임하면서 유독물 관리자도 겸임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겸임을 몇 개까지 할 수 있습니까? 한명이서 많은 관리자로서의 선임이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대기·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이 유독물 취급시설에 동시에 해당되고 해당 배출시설에 대해 임명된 환경기술인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 자격기준에 부합할 경우 유독물관리자로 겸임이 가능하며, 대기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이 무조건적으로 유독물관리자로 겸임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산업설비공사업면허로 수질오염방지 시설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건설업면허중 산업설비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면허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관련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면허로 수질오염방지시설업도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반드시 수질오염방지시설업을 하기 위해선 수질오염방지시설업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요?



수질오염방지시설업(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말함)의 설계·시공에 관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신기술



1) 얼마전 신문에 건설교통부나 환경부, 과학기술부 등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던 신제품 및 신기술 인증제도가 통합된데 이어 신기술 인증 연장 기간도 기존의 2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현재 환경신기술은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고, 연장기간도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었는지, 변경되었다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 특허 및 환경신기술을 실제 납품 할경우 특허 기술료 및 신기술 기술료를 납품내역 외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신기술의 경우(환경신기술 보유자 : 공법사 =하도급자) 시공업체로 부터 기술료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발주처로부터 기술료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기술료 금액에 대한 한정이 있는지에 대한 관련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은 신기술로 인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신기술 인증제도는 '우수한 신기술의 보급과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신기술 납품시 기술료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반출정화시 정화된 토양 재이용 기준



"반입정화부지가 "가" 지역일 경우(물론 이 지역에 허가받기는 쉽지 않겠지만요), 반드시 "가" 지역 기준에 준하여 정화를 완료하여야 정화토로 인정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 토사가 재반출되어 이송될 지역기준(예를 들어 "나" 지역)에 준하여 정화를 완료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의 답변으로 "반입정화시설이 "가"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정화기준은 정화후 반출하여 사용될 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나 환경부 고시 제 2005-124호 "특정오염 관리대상시설의 방지시설등에 관한 고시 제정인" 제 4조(반출 정화) 2항에는 "오염토양을 발생현장으로부터 반출하여 정화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정화기준은 제 1조의 5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토야오염우려기준으로 한다. 다만 오염토양 발생장소의 지역기준과 정화 후 재이용될장소의 지역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입니다.

1) 위 사항들이 상반되는것 같은데 어떤 기준에 맞추어서 처리해야 하는지요?

2) 발생현장과 재이용지역이 같은지역이면 문제가 없으나 발생현장이 가지역이고 재이용지역이 나지역이라면 최종 정화 기준은 가, 나 지역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A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발생장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다만, 나지역의 오염토양을 정화하여 가지역으로 재이용되는 경우와 같이 기준이 강화된 지역으로 가는 경우에는 반출하여 사용될 지역인 “가” 지역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발생현장이 가지역이고 재이용될 장소가 나지역이라면 “가” 지역 기준으로 정화하여야 합니다.

토양오염수시검사 초과와 관련

Q
A정유회사(주유소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2006. 5월 토양오염 수시검사를 실시하여 우려기준을 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토양오염 복원은 A회사가 하기로 하고 2006. 7. 1일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변경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확인한 결과 해당 관청에서는 전 임차인(B)에게 시정명령이 되었으며 이를 미이행 할 경우 당사에도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1) 이경우, 시정명령이 전 임차인(B)에게 나갔는데 맞게 나간건지?

2) 관청에서 토양변경신고가 수리되면 행정처분 건은 승계가 되는지?

3) 우리회사가 행정처분을 승계하지 않으면 변경신고 처리가 불가능한지요?

A
토양오염기준 초과에 따른 정화조치(시정명령)은 초과당시의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설치신고자에게 조치됩니다. 따

라서 신고자가 임차운영자(B)라면 B에게 시정명령조치 됩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운영자 변경은 동 시설과 관련한 책임이 당연 승계되는 것으로 시정명령도 승계되며, 자의적으로 승계여부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시정명령의 이행주체는 B 또는 C(현임차인)가 될 것이나 정화비용부담 등에 대하여는 소유자 또는 임차인과의 계약관계에 의하면 될 것입니다.

시설가동여부

Q
폐수배출 업체에서 잘못으로 인하여 조업 정지를 당하였을 경우에 공장내에 있는 기계중에서 폐수, 대기배출시설외에 전혀 관계 없는 다른기계(가공 포장 등)의 가동을 할 수 있나요?

A
수질환경보전법 제6조에 의한 배출시설은 산업분류표에 의한 업종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가공포장공정이 해당 폐수배출시설과 일련의 단위 공정으로 배출시설허가(신고)를 받았다면 조업정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허가증(신고필증)에 등재된 공정도(배출흐름도)등을 근거하여 정확한 판단은 허가기관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임차 축사 축산폐수배출시설 신고(허가) 방법

Q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가 되어 있지 않은 축사를 임차하여 가축을 사육하려고 합니다.



이에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축사 소유자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임차인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약 임차인 명의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면 어떤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1항, 제4항 규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에서는 시설 소유와 상관없이 실제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허가 또는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허가 또는 신고시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독물 운반업

화물운수회사(차량지입)입니다. 회사에 차량이 거의 다 개인소유(현물출자차량)인데요.

명의만 회사(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차량이 유독물을싣건, 위험물을싣건, 일반화물을싣건 회사와는 별개이고, 회사에서는 차량지입료만 받습니다. 그런데 차주가 위험물을싣게되어 차량운반업등록을 법인에서 해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유독물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등록이 되어서 선임을 했는데 왜 지입회사에서 유독물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하나요? 저희 회사는 단순히 차주들 자기네들 수입원이고 회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관리는 더더욱 할수가 없고, 원래대로 하면 화주회사(물동량 공급자)가 유독물관리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장거리를 많이 하는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사에는 들을수도

없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합니까?

이해가 잘 안됩니다. 단지, 유독물 사고났을때 책임소재를 하기 위한 것으로 밖에는 이해가 안되네요. 관리자가 있어도 관리를 할 수 없으면 있으나 마나 한 것 아닙니까?

귀사는 현물출자 차량을 이용하여 유독물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는 경우이므로 유독물운반업 등록을 받아야 하며, 모든 유독물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유독물 취급자의 교육 및 안전관리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할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합니다.

폐수 1종업체 환경기술인 선임관련

당공장은 1종폐수업체로 회사의 경영상태 악화로 폐수처리업무를 도급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환경기술인(수질기사)의 법적선임자가 도급업체에서 선임하고 상주할수가 있는지 아니면 저희 회사에 별도로 법적 선임을 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도급회사가 아닌 저희회사에서 선임을 하고 근무를 해야 한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에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자체 회사내에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하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 특별법 제54조의4에 따라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질의응답은 환경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코너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